

건 축 과

주 요 사 업

1. 공동주택 건설 공급계획
2.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
3.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
4.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 사업

주요사업

1 공동주택 건설 공급계획

- ◇ 정주환경이 좋은 도시를 위한 주택건설공급으로 주거안정 도모
- ◇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환경속의 살기 좋고 편리한 주거문화 정착

□ 주택보급 현황

(2017. 12월 기준)

가구수	종 류 별 주 택 수(호)					보급률 (%)
	계	단독	다세대	연립	아파트	
161,564	199,246	84,887	9,163	3,676	101,520	123.3%

□ 주택건설 추진현황 [24개 단지 : 18,577세대]

- 일반분양 : 16개단지 10,480세대
- 재개발·재건축 : 8개단지 8,097세대
- ※ 2018년 시공 및 사업승인 추진 단지

□ 주택건설 추진방향

- 아파트 단지 친환경 인증 건축물 건립
- 신재생 에너지 시설 및 친환경 자재 사용 등 권장
- 살맛나는 행복한 삶터 주거공간 조성

□ 기대효과

- 시민의 정주의식 고취와 행복한 주거문화 창조
- 자연친화적인 주택공급으로 행복한 삶터 제공

②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

- ◇ 공동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행복한 삶터 제공
 - ◇ 공동주택 시설관리 비용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-

□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
20세대 이상 공동주택(사용검사 후 5년경과)
- 소요예산 : 400백만원
- 사업내용 : 시설설치 비용의 일부 지원
 -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
 - 상·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
 - 수목 전지
 -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, 체육시설 보수
 - 자전거 보관대 설치, 옹벽 담장, 녹화시설 등

□ 추진실적 및 계획

-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: '17. 4/4분기
- 현장실사 및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: '18. 1/4분기
- 지원 단지 확정(59개) 및 사업 착수 : '18. 1/4분기
-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 : '18. 2/4분기
- 보조금 정산 : '18. 3/4분기

□ 기대효과

-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행복한 삶터 주거 공간 조성
- 노후·불량한 시설물의 정비로 입주민 안전 및 편의 도모

③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

- ◇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·거주형태·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
-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
- 대 상 : 중위소득 43%이하 및 부양의무자기준 충족하는 수급자
※ 주거급여 대상자 : 4,476가구 6,762명
- 지원내용

【임차급여】

- 내 용 : 임차가구,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
- 사 업 비 : 임차급여 5,160백만원(국4,128, 도516, 시516)

【수선유지급여】

- 내 용 : 자가가구,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 주택개량 (경보수 378만원, 중보수 702만원, 대보수 1,026만원 이내)
- 사 업 량 : 80여 가구
- 사 업 비 : 400백만원(국320, 도 40, 시 40)
- 위탁기관 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

□ 추진실적 및 계획

- 연간수선계획 확정 : '18. 1월
- 사업시행(수선유지 협약 체결 2월) : '18. 1 ~ 12월

□ 기대효과

-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 현금 및 현물 지급으로 기초생활 보장, 자활능력 제고
-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환경 개선

④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 사업

- ◇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금 융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주여건 조성,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
 - ◇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와 사회 양극화 해소 도모
-

□ 사업개요

- 지원 근거 : 「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」
- 융자지원금 : 10세대 / 300백만원
- 사업내용
 - 생계·의료·주거 수급자 중 우리시 계속 거주 3년 이상인 무주택 세대에서 접수 선발
 - 세대 당 3천만원 이하의 융자금 지원
 - 지원기간 2년(자격유지 시 1회 연장 가능)
 - 이자 연 2%, 보증금 10%

□ 추진실적 및 계획

- 읍·면·동주민센터 통보 및 신청접수 : '18. 4월
- 신청대상자 자격확인 및 선정 : '18. 5월
- 전세권 설정 : '18. 6월

□ 기대효과

-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 부담 감소와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